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29

발의연월일: 2025. 3. 4.

발 의 자:소병훈·서미화·김교흥

박지원・허 영・박 정

이병진 · 용혜인 · 윤호중

김영진 • 권칠승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암검진 수검자의 사후관리와 암검진의 장기적인 효과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를 위해서는 '사망원인통계'를 매년 집계하는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암검진 실시대상, 실시현황 및 수검자의 진료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 연계·관리가 필요한실정임.

이에 검진자료의 활용과 통계자료 작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, 통계청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3 항 등).

법률 제 호

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 보험공단(이하 "국민건강보험공단"이라 한다) 및 건강보험심사평가 원(이하 "건강보험심사평가원"이라 한다), 통계청, 「통계법」에 따 른 통계작성기관, 그 밖에 국민건강검진 관련 법인·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진자 료의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"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 단(이하 "국민건강보험공단"이라 한다)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"건강보험심사평가원"이라 한다)"을 "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 사평가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검진자료의 활용) ①・②	제18조(검진자료의 활용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③ 보건복지부장관은 「국민건
	강보험법」에 따라 설립된 국
	민건강보험공단(이하"국민건
	강보험공단"이라 한다) 및 건강
	보험심사평가원(이하 "건강보
	험심사평가원"이라 한다), 통계
	청, 「통계법」에 따른 통계작
	성기관, 그 밖에 국민건강검진
	관련 법인·단체에 대하여 보
	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
	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
	검진자료의 활용에 필요한 자
	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
	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
	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
	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
	<u>야 한다.</u>
<u>③</u> · <u>④</u> (생 략)	<u>④</u> ・ <u>⑤</u> (현행 제3항 및 제4항
	과 같음)
제22조(자료의 협조요청) ① 보건	제22조(자료의 협조요청) ①
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을	

② (생 략)